

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신청 연장 공고

「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(접수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5. 14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목적 :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
2. 신청기간 : 2025. 4. 23. ~ 6. 13.(51일간)
3. 신청(접수)처 : 남동구 농축수산물(수산자원팀)
4. 사 업 량 : 어선 장비 00대* *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량 변경가능
5. 지원내용 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계약 체결한 품목 설치
 - 초단파대 무선전화(VHF-DSC) : GPS연동
 - *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
 - 자동소화시스템
 - * 2종 자동소화장비(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) 보급.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 (무인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, 화재탐지기,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
 - 구명조끼(어선용 구명의 포함) : 적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
 - * 낚시어선의 경우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시행령 [별표4]에 따름
 -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(V-Pass) : GPS연동
 - 「어선법」 및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(기관 제외)
6. 지원비율 : 국비 30%, 시비 15%, 구비 15%, 자담 40%

7. 사업내용 : 우리구에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항해안전, 소방, 구명 설비 지원

8. 신청자격 : 우리구에 등록된 어선 어업인으로서 우리구에 주소를 둔 자(공고일 이전에 한함)

*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
*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

9. 지원한도

-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(설치비 포함)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

-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, 다만, 팽창식 구명조끼(조끼형·벨트형) 및 2톤미만 어선의 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

10. 신청서류

- 사업신청서 1부

-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

-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(접수시 원본 지참)

- 노후 및 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1부[장비·설비 제작증명서 및 거치확인서 등]

-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(2024년)

11. 사업자 선정
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

- 우선순위 : 동일 순위일 경우 톤수가 작은 어선(어업인) 선정

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

② 노후장비·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

③ 구명·소방·무선설비 등(AIS전자해양부이 포함) 어선안전장비(설비) 설치 희망 어업인

12. 사후관리 기간

분류	내용연수(사후관리기간)	처분제한기준
장비·설비	조달청 「내용연수」에 등록된 장비 : 설치일(물품납품일)로부터 조달청 「내용연수」가 정한 기간까지 조달청 「내용연수」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: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* 조달청, 해수부 「내용연수」 모두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설치일(물품납품일)로부터 5년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

※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상 사후관리기간(예시) : 레이더 9년, GPS플로타 8년

※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·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

13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남동구 농축수산과 수산자원팀 (☎ 032-453-60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(별지 제1호) 사업신청서 1부. 끝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신청서

신청자	단체 등의 명칭					
	성명 (대표자명)		생년월일		전화번호	() -
	주소					
	종사경력	년				
신청내용	사업명					
	어선명 (어선번호)	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				
		종류	허가·면허 번호 (허가기관)			
사업비 (천원)	계	국비 (%)	지방비 (%)	자부담 (%)		
사업내용별 규모 (량)						
<p>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</p> <p>남동구청장 귀하</p>						

- (주) 1)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
2)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	
수집·이용할 항목	[필수적 정보] ○ <u>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종사경력</u>	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 됩니다.	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자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	▶ 필수적 정보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
2.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<u>해양수산부 보조·용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</u>	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○ <u>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</u> - <u>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하거나,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</u>	
제공한 개인정보 항목	○ <u>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어선 번호</u>	
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	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제공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	

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남동구청장 귀중